



글렌데일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저희는 이례적인 어려운 시기에 연락을 취하려 하며, 여러분을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하는 파트너로 여기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발병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분들은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지의 목적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례없이 수입 손실과 불확실성에 처한 상황에서 방법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서로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의 퇴거 및 렌트비 명령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이런 접근법으로 알려주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자원에 추가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코로나19 렌트비 구제책 프로그램은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합니다. 글렌데일 임차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임대계약서에 이름이 나온 임차인)은 2-1-1에 전화하거나 카운티의 웹페이지에서 사용하게 되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십시오. (211la.org/lacounty/rentrelief). 더 자세한 정보와 이용할 수 있는 신청서 링크는, Glendaleca.gov/rent 에서 찾아보십시오.

현실에서 팬데믹 이전이나 특히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가 잘되려면 서로가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이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이웃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와 얼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면서 서로에게 친절하고, 안부를 묻고, 최선을 다해 이웃들을 도와주십시오.

비지니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는 이번 상황의 특별한 사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질문은 글렌데일 주택국에 818-548-3926 혹은 rent@glendaleca.gov으로 연락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렌데일 시

주거용 퇴거 유예 자료표

집주인과 세입자를 위한 통지: 글렌데일의 코로나19 퇴거유예는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퇴거를 막습니다. 유예는 2020년 3월 24일에 발효되었고, 2020년 8월 31일에 만기될 예정이며, 시의회가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Glendaleca.gov/Rent 에서 찾아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여러분의 수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히 줄었다고 증명하면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에서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조례안으로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책임

만일 세입자가 코로나19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통지서와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집주인은 퇴거를 시작하거나 미납렌트비에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1. 생산적인 소통을 위해, 집주인은 www.Glendaleca.gov/Rent에 나온 자원목록과 유예 통지서를 주어야합니다.
2. 집주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겪지않은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계속 수금합니다.
3. 비상사태명령이 만기될 때까지 집주인은 새로 렌트비 인상을 하지 못하며, 명령이 만기된 후 인상이 효력이 있는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세입자의 책임

만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면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만일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반드시 렌트비를 내야합니다.

www.Glendaleca.gov/Rent에 나온 렌트비 미납 통지서를 작성하여 렌트비를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고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십시오.

1. 8월1일까지 납부할 렌트비는, 여러분이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주인에게 알리십시오.

- 실업
- 근무시간 단축
- 여러분이 일하지 못하게 된 주정부나 지방정부 비상사태 조치
- 병원비 등 특별한 본인부담 비용
- 학교 폐쇄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결근함
-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코로나19에 걸린 가정/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결근함.



2.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손실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 근무시간 단축이나 해고의 이유가 코로나19 라는 고용주의 편지
- 코로나19 발병 이전과 이후 월급명세서
- 의료비 고지서 (코로나19 관련)
- 발병 이전과 이후 경제적 상황이 나온 은행내역서
- 육아 지출 비용
- 해고 통지서



세입자는 유예가 만기되고 12개월 안에 연기된 렌트비를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르게 상환기한을 합의하지 않는 한, 세입자는 12개월 상환기간에서 3개월마다 말일에 연체된 렌트비의 25%를 최소한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상환기간에 이사가면, 전체 액수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